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646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2022.07.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8-31호(2018.05.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75호(2021.04.1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194호(2022.12.2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04. 13. ~ 2023. 04. 27.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 3) 사업면적 : 40,512.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오형진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30, 301호 (노량진동)
-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5층/지상30층, 11개동, 844세대(임대 145세대 포함)
-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5,554.7㎡, 공원 1,508.0㎡, 공공시설 1,909.0㎡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9814),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2-0890)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